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규정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규정

제정 2021. 10. 13.
개정 2023. 9. 21.
일부개정 2024. 3.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월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지도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도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생활스포츠지도사(일반, 어르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제2장 급여 및 수당

제3조(급여의 결정) ① 지도자의 기본 급여는 정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정하는 급여를 준용한다.

② 각종 수당에 대하여는 영월군 예산 확보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결정) ① 지도자의 급여일은 다음과 같다.

- 급여: 매달 25일
- 시간외 수당: 익월 초

②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외에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1. 시간외 근무수당
2. 명절휴가비
3. 정액급식비
4. 교통보조비
5. 근속수당 <신설 2023. 9. 21.>
6. 활동수당 <신설 2023. 9. 21.>
7. 직급수당 <신설 2023. 9. 21.>

제6조(지급) ①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1년 이상 근속자가 면직할 때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으로 면직되는 경우와 해당 월 1일 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휴직 중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입대 휴직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계속 지급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만 지급한다.
-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급여 및 수당 지급방법) 급여 및 각종 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퇴직금

제8조(퇴직금) 퇴직금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다.

제9조(근무연한계산) 근속연한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달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

로 계산한다.

제10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 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된다.

제11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2021. 10. 1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예산 관련 사항에서는 영월군과 협의가 된 이후에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예산 관련 사항에서는 영월군과 협의가 된 이후에 시행한다.

부칙 <2024. 3.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예산 관련 사항에서는 영월군과 협의가 된 이후에 시행한다.

